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[시행 2015.8.7] [조례 제3874호, 2015.8.7, 제정]

강원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원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 박물관 및 미술관 ”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 법 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ㆍ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육성 및 발전) 강원도지사(이하 “ 도지사 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) 도지사는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에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
2.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
3.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

제5조(지원 신청)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경비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목적에 위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보고 등)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지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)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(이하 “ 위원회 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
2. 제6조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문화예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
2. 강원도의회 의원
3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·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까지 알릴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2조(위원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
3. 위촉위원이 위원사임을 원할 때

제13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.
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3874호,2015.8.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